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m ²)	비 고
1	성북구	길음동 1089번지 일대	7,692.5	

나. 제한사유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및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

(단,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 자동 해제됨)

마. 제한대상행위

1) 제한대상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마)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토지분할 등)

2) 제한제외 대상

- 가)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 나)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개축 및 재축
- 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2.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05. 22. ~ 2026. 06. 12.

나. 제출방법 :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2241-2852)으로 서면 제출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형도면

